2019년 6월 제64호
ISSN 1976-6041(On-Line)
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하상구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194 **FAX** 041-968-2989

특집 : 범죄피해자 보호

권 두 언	왜 피해자, 피해자 정책, 그리고 경찰인가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이윤호 교수
	범죄피해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한 국민중심 사법기관으로의 도약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박기태 총경
전문가 제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주혜선 원장
	경찰단계 범죄피해자 위기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김정윤 교수
현장의 소리	치안 현장 속으로 (피해자심리지원요원 인터뷰)	서울청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 옥지연 경장
연구소 소식	연구소 동정	

Total Solutions in Policing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왜 피해자, 피해자 정책, 그리고 경찰인가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이윤호 교수

형사사법과 범죄학의 균형 바로잡기

냉전의 종식과 절대적 빈곤의 해소를 통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서의 전쟁과 기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약화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고민하고 있다. 바로 범죄문제이다. 갤럽(Gallup)을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꼽고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사실 매슬로우(Maslow)가 오래 전 갈파한 인간의 욕구단계에서도 안전의 욕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만큼 우리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매슬로우조차도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인간의 모든 욕구,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는 물론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감히 말하건대, 안전은 인간의 욕구 중 하나가 아닌 모든 인간욕구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국가의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안관과 주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의 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상하원 선출이나 주지사 등 자치단체장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출마의 변이나 정강정책, 그리고 공약에는 반드시 이 범죄와 안전이라는 형사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국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기소하여 재판하고 처벌하거나 교화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실제로 형사사법기관과 정책의 존재이유인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을 위한 정책과 자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는 또는 이러한 현실에 고착되게 한 데는 범죄와 관련된 학계와 학문의 편견과 편향, 그리고 무관심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범죄학이나 형사정책은 누가, 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얼마나 범하는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결국 이런 노력은 가해자 중심(Offender-centered)의, 또는 가해자 지향(Offender-oriented)의 가해자학, 즉 Offender + Ology에의 과도한 관심의 집중을 초래했고, 그 결과 거의 모든 범죄관련 학문과 형사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범죄현상의 한 축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야말로 범죄피해자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Forgotten Being)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특정범죄, 예를 들어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 - 물론 그들조차도 엄격하게는 피해자가 전통범죄와 다를

안전은 모든 인간욕구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잊혀진 존재(Forgotten Being)로 지내왔다.

뿐이지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범죄학에서는 이런 점에서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범죄현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정확한 역할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는 그야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적으로, 재산상으로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 가해자보다 더 비난받는 피해자도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피해를 촉진, 촉발, 유발하여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피해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무고한(Innocent) 피해자들이며, 이들은 단지 그들에게 범죄가 발생한 그 불행한 시간에 그 불행한 장소(wrong place at the wrong time)에 있었던 불행한 사람(Unlucky person)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불행마저도 사실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시민은 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에게 각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불행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는 잊혀져 왔을 뿐이다.

범죄피해자들이 받아온 차별은 누구를 위한 사법정의이고 누구를 위한 형사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대해 내린 답이다.

그들은 단지 잊혀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차별받기까지 하여 누구를 위한 사법정의이고 누구를 위한 형사정책인가 알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피해자들은 절규한다. 가해자들은 국가가 앞장서서 학업을 제공하고, 직업훈련도 해주며,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질병의 치료 등 모든 건강관리도 책임져 주며, 출소 후에도 직업알선 등의 노력을 베풀고 있지만,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가족이 온갖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호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을 원망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흔히들 피해자의 신고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지적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말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마저도 제대로 신고하기조차 꺼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고 이후에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2차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적지 않다. 형사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가해자 취급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판단의 결과에 대한 불만도 이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이념, 그리고 패러다임이 시도되어 왔지만 하나같이 성공적이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형사정책이나 형사사법의 목표는 당연히 사법정의(Criminal Justice)의 실현이지만 지은 죄에 상응(proportionate)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을 교화개선(Rehabilitation)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사정책 어디에도 한 당사자요 축이 되어야 할 피해자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나아가 그들이 재범을 하지 않아 사회가 그만큼 보호받고 안전해졌다고 해도 해당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피해자의 모든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정

책, 형사사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는 바로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자 회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는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법정의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피해의 회복이 사법정의요 형사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인 것이다.

가해자학적 형사정책의 반성

지금까지의 형사정책과 범죄학은 가해자학으로서 가해자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정책도 개발되었다. 자고로 형사정책은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이 있겠지만 그 모든 정책이 사실은 누가, 왜 범행을 하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되었다. 범죄는 무릇 신체의 질병과도 같아서 일부에서는 사회적 질병(social illness)라고 한다. 현대의학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예방의학이 강조되고 있다.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치료가 되더라도 시간, 고통,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부담하여 완쾌되더라도 대부분은 발병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범죄도 마찬가지다. 범행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어도 전과 같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도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범죄도 예방의학처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가해자 중심의 범죄학에서 보는 예방은 당연히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제거하거나 해소함으로써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한 형사사법기관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기의 차단이나 제거와 해소를 통한 범죄의 예방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했듯이,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범행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Potential Criminal), 매력적인 범행의 표적(Attractive Target), 그리고 범행의 기회(Opportunity)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조건들이 필요충분조건(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s)이라는 것은 바로 이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이들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차단하거나 해소하고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던 우리의 노력들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조건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매력적인 표적이 되지 않고 범죄가자 우리에게 범행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피해자 중심의 범죄예방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범죄피해자학에서는 범행동기의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보다는 범행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서 범행발생을 예방하는 범죄피해예방(Victimization Prevention)이 더 강조되고 있다. 좀 더 상술하자면 우리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자는 것인데, 이

현대 범죄피해자학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행동기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보다는 범죄피해의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피해의 원인 파악, 피해자에 대한 처우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런 노력들을 통칭하여 상황적 범죄 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라고 한다. 경찰이 범행동기를 차단하거나 해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기보다는 당연히 잠재적 피해자가 범행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편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한 정책일 것이다.

피해자학(Victimology)이 답이다

범죄학(Criminology), 즉 가해자학이 결국 범죄자와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학은 피해를 당한 사람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범죄를 하지 않는 반면, 일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차이가 바로 범죄의 원인이요 동기라고 보는 것처럼, 피해자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 반면에 일부는 그 피해를 직접 경험하고 그 중 일부는 한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당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이다.

만약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자로부터, 어떤 범죄를 많이 당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특정 장소, 시간, 사람을 피하면 범죄는 그 만큼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에서는 범행기회의 차단이나 제거를 강조하는데, 범죄피해에 취약한 사람과, 위험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조합하여 취약한 사람이 위험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서 위험한 사람에게 노출되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노출될 때 자기 방어와 보호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이런 노력에 경찰이 한 몫을 더하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해자 중심의 순찰을 강조하여 위험한 사람과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략적 순찰(Strategic atrol)을 하였다면 이제는 취약한 사람과 시간·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순찰이나 전략적 경찰활동을 하면 될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와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분석은 범죄피해와 피해자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조사(Victim Survey)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일부 피해조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활동과 노력으로 얻어진 정보, 즉 피해자 행위와 경험적 결과에 전적으로 기초한 이론들이 더욱 발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해야 할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정책은 경찰이 최 일선(front line)이다

신체적 상처이건 정신적 상처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흔히들 병이나 아픔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수록 고통은 적고 치료를 위한 비용과 노력이 적게 요구되는 반면, 그 효과와 결과는 배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 정책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피해자 정책은 과연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미미하지만 그나마도 우리는 개입할 적절한 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우려가 크다.

현재 우리의 피해자 정책은 대부분이 관이 지원하고 민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형태이다. 전국 검찰기관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자원봉사단체인 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범죄피해자가 검찰단계에까지 이르기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흔히들 말하는 'Golden Time'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개입의 'Golden Time'은 언제일까. 당연히 응급의료와 마찬가지로 빠를수록 좋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입과 치유는 그 상처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로부터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다. 범죄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개입하여 치료하고 치유함으로써 치유와 치료의 비용도 절감하고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의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 있는가.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다. 피해자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입, 지원, 보호는 당연히 경찰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경찰이 주도해야 하고 경찰의 책임이어야 한다. 피해자 정책이 경찰이 최 일선기관이 되어야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여 사건이 검찰단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전체 범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 또한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릇 정책은 그 정책의 효과가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도달되어야 하며, 이 또한 범죄피해자 정책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몫이어야 함을 일깨워준다. PSI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빠를수록 좋다. 'Golden Time'을 놓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입, 지원 보호가 시작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한 국민중심 사법기관으로의 도약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박기태 총경

들어가며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탄생 이후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 형사사법기관의 주된 책무는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범인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제도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범인을 형사사법제도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으며, 국가와 범인이 범죄혐의의 입증여부를 다투는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주된 보호'의 대상은 적법절차 원칙에 기초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이었다. 실상 진정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 범죄피해자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었겠으나, '국가 VS 범인' 구도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피해자를 제3자적 지위에 머물게 하여 결국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가치를 변방으로 내몰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형사사법절차상 제3자적 지위에 머물고 있던 범죄피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도 마련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경찰은 범죄 현장과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활동의 첫 단계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경찰 외에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지만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통한

〈표 1〉 기능별 피해자보호 정책

기능	추진 내용
공통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특화된 권리고지서(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용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온라인 사건조회 서비스(형사사법포털)
감사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 지원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운영
수사 생안	▶사건통지 활성화 등 정보제공 강화 ▶피해자·신고자 신변보호 실시 ▶가명조서 작성대상 확대, 피해품 회수활동 적극 전개
여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여경 배치 ▶학교폭력 '117신고센터' 운영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학대예방경찰관·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진술조력인, 속기사 등 제도 시행 ▶가정폭력솔루션팀 사례회의
교통	▶뺑소니·무보험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내용 및 절차 안내
외사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등)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을 최초로 접하는 경찰 역할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두에서 기존 형사사법제도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과거의 경찰활동 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보다는 신속한 범인 검거와 혐의 입증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vs 범인' 구도의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범죄피해자는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고, 범죄피해자보호의 가치는 변방으로 내몰린 때가 있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로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의 주체가 되었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그러나 조직 내·외부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2004년 수사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1]'을 설치하고 2006년에는 심리학 전공자 등을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 채용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아래와 같이 기능별 특성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피해자 보호 전담 체계를 구축하였다.

- **경찰청** : '피해자보호담당관' 신설(피해자보호기획계 / 피해자지원계)
- **지방청** : 서울·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계' / 그 외 지방청 '피해자보호팀'
  ※ 각 계·팀 소속으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위기개입상담관 운영
- **경찰서** : 청문감사관실 소속 '피해자전담경찰관' 1명씩 배치

피해자 전담인력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보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범죄피해자 지원망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명시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를 최초 접하는 지역경찰·수사·형사·교통조사 등 각 기능별 팀장을 피해자보호관(10,676명)으로 지정하여 전 경찰단계에 범죄피해자 보호 가치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한계[2]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회복적 사법 이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UN·EU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에 회복적 사법 이념을 전 형사사법단계에 적용할 것을 권고[3]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을 위한 사법활동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핵심가치로 삼는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을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갈등·분쟁 또는 범죄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회복적 사법 이념과 기술[4]을 활용하

1) 범죄피해자대책실(총경 1명 등 6명)은 2005년 인권보호센터(총경 1명 등 9명)로 확대·개편되었고, 수사국 산하에서는 전 기능에 걸친 인권·피해자보호 시책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9년 감사관 산하로 이관되었다.

2) 기존 형사사법제도는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무관심하고, 근본적 범죄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미흡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

3) <1999년 UN>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범죄 예방 및 벌금형·자유형의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을 회원국에게 권고 / <2018년 EU> 회복적 사법을 범죄의 종류, 심각성, 발생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해야 하며,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도록 권고

여 경찰,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자 패러다임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형사사건 또는 이웃 간 분쟁 등에 대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경찰관이 직접 진행하거나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양자간 합의 시 형사절차 미진행 등 다이버전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 중에 있다.

경찰은 회복적 사법 개념을 발전시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핵심가치로 삼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금년 2월 법조계·학계·NGO 등 각 계에서 회복적 정의 이념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경찰청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경찰청 관련 기능 및 현장 TF를 구성하여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대 추진과제 중심의 회복적 경찰활동 실천모델을 마련했다.

1 **갈등관리** : 현장에서 회복적 개입을 통한 갈등·분쟁 해결 도모

2 **권리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 피해자 참여 확대 및 피해회복 지원

3 **회복적 종결** :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회복적 대화모임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4개 전문기관(NGO)과 함께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을 실시 중으로, 6.24. 기준 35건이 접수되었으며 회복적 대화모임이 완료된 13건은 모두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통해 상호 화해 등 조정이 성사되었다.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개요>

- **(대상)**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
- **(기간)** 4. 30. ~ 10. 31. 6개월간
- **(방식)** 15개 경찰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4개 전문기관이 한 권역씩 담당, 회복적 대화 활동을 전담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진행
- **(절차)** 사건선정(각 기능) → 예비검토(청문·여청) → 회복적 대화(전문기관) → 결과반영*(각 기능) → 모니터링(청문·여청 / 전문기관)

* 불법성, 합의여부, 피해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 회부(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하거나 수사서류에 활동결과를 첨부하여 송치

회복적 대화모임에는 가·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지인, 교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회복적 경찰활동이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넘어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홍보 브로셔

4) 핵심요소 : ① 피해 회복에 중점 ② 이해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 훈련을 받은 진행자가 주도하는 대화과정을 통한 치유와 회복 ③ 공동체의 주도적 역할 등

경찰청은 금년에 연구용역(~12월)을 통해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실천모델을 보완하는 한편,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현장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내년도 전국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맺음말

지난 몇 년 사이 현장 경찰관들의 많은 노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가치가 치안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응보적 정의에 기반한 '국가 VS 범인' 구도의 기존 형사사법절차 속에서 결국 범죄피해자는 주인공이 아닌 제3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어 그들의 진정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틀에서 탈피하여 범죄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핵심가치로 삼는 회복적 정의 이념을 실천하여야 한다.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틀에서 탈피하여 회복적 정의 이념을 실천할 때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와 처음 대면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보호 가치를 경찰활동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PSI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주혜선 원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 모델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일선에서 범죄피해자와 가깝게 접촉하고 조력하는 경찰의 초기 대응은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직후의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건 경험 이후에 다양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반응과 변화들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적절한 대처에 곤란을 경험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건 경험으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적절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와 같은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사람이 처음 접촉하는 대상이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된 장소, 사람, 대화, 활동은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촉발시킬 수 있고 이에 뇌의 편도체[5]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사건을 경험하던 당시의 고통감이 재연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상태는 뇌의 해마[6]와 전전두엽[7]의 기능을 저하시켜 사건에 대한 외현 기억을 인출하여 언어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일선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신체·심리·행동적 반응이 어떠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자의 위기 정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하여 직무 역할 내에서 제공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경찰 직무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무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개발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근거기반 경찰 위기개입 모델(Victim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7-Stage for Police, 이하 P7-CARE)'(주혜선, 김진희, 유현경, 정하영, 김도희, 2019)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근거기반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은 7가지 핵심 요인들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7단계 적용을 위한 지침서를 함께 제안한다. 경찰 위기개입 모델은 범죄피해와 같은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사람이 가장 처음 접촉하는 대상은 피해자에게 훨씬 큰 심리적

5) 감정과 관련된 학습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정서통제, 계획과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첫 접촉을 하는 경찰의 역할을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주혜선 등(2019)은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경찰 위기개입 모델과 일반 트라우마 위기개입 모델들을 체계적으로 개관하는 문헌연구와 함께 국내 실무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내 역할별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통합하였다. 경찰 위기개입 모델은 일반 트라우마 위기개입 범위 및 역할과 비교하였을 때 경찰 위기개입 모델의 공통적인 또는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의 7가지 핵심 원리는 1) 현장 지원, 2) 피해자 중심 접근, 3) 트라우마 이해 접근, 4) 취약층 돌봄, 5) 형사절차 조력, 6) 지역사회 기반 지원, 7) 기관 간 협력 지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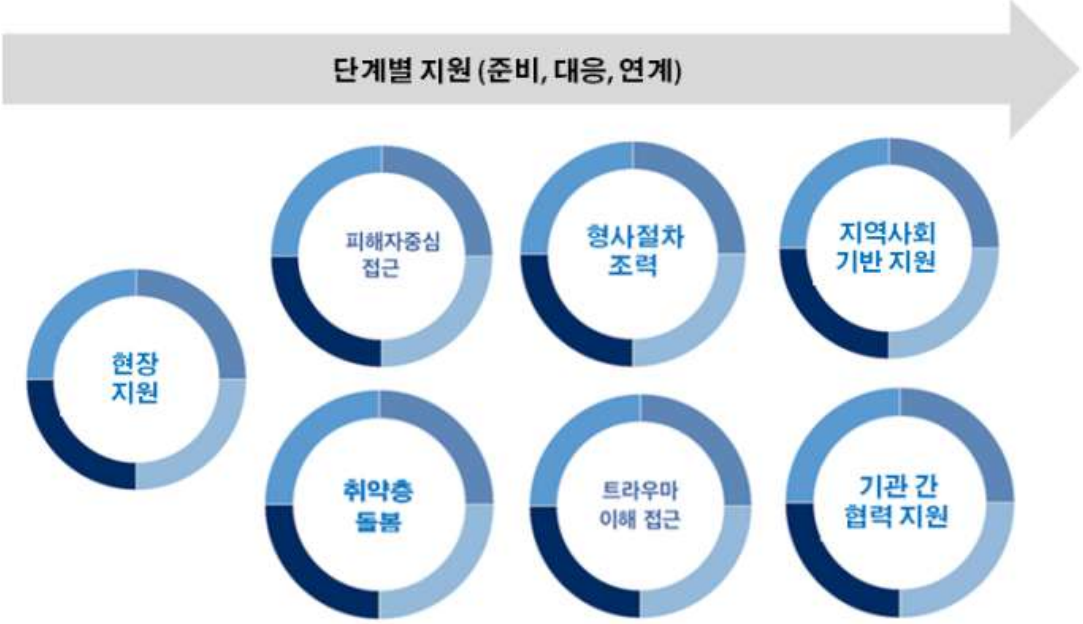

• **현장지원 중심**	범죄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지원, 사건현장에서 즉시 피해자에게 안정성 및 통제권을 제공하는 보호
• **피해자 중심 접근**	피해자의 특성 및 필요를 반영하고 고려하여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 **트라우마 이해 접근**	트라우마를 받은 피해자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반응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는 보호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능동적 연계를 제공하는 지원
• **형사절차과정에 대한 조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에 피해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원
• **지역사회 기반 지원**	범죄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의 사회적·문화적·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는 지원
• **기관 연계모델의 확장**	각기 다른 역할 및 자원을 보유한 정부기관, 유관기관, 민간기관들이 피해 대상자의 단기·장기적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협업하는 지원

주. 주혜선, 김진희, 유현경, 정하영, 김도희 (2019).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 모델 연구: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의 개발과 활용. 치안논총 제35집, pp147-151(재인용).

특수한 위기개입 범위와 역할을 정의하며 구체적이고 명료화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을 2차 가해자로 경험하는 것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수사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찰의 범죄 피해자 위기개입에 대한 연수와 훈련 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교육 요소들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은 트라우마 위기개입과 경찰의 위기개입 모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7가지 핵심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7가지 핵심원리는 범죄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에 노출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수행시 위기개입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로, 이러한 핵심원리는 경찰 위기개입 7단계의 매 단계에 반영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의 핵심 7단계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은 '준비-현장개입-응급개입-초기개입-연계개입-사후평가' 단계와 함께 모든 단계의 공통요인인 '경찰관 자기 돌봄'을 포함하는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별로 실시자, 대상자, 개입 목표 및 실시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특정 단계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 **(P1: 준비단계)**에서는 평상시 범죄발생 예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 구축, 경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특히, 범죄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보호와 지원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여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 **(P2: 현장단계)**는 '신체적 안전에 초점을 맞춘' 단계이다.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직후, 사건 현장에서 현장출동경찰에 의해 실시된다. 사건 현장에서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생명연장 및 신체적인 안정이다. 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는 자살, 자해, 타해 위험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추가적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 **(P3: 응급개입 단계)**는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 지역경찰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에 의해 실시된다. 범죄 현장을 정리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직면해야 할 때, 사건 초기진술단계에서 반복된 진술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때, 가해자가 미검거 되거나 불구속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보복피해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낄 때 현장에서의 '심리적 응급처치'를 목표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임산부, 영아/유아의 모, 신체질환자, 정신질환자'는 트라우마에 대한 취약층으로서 이들이 피해자로 파악되었을 경우에는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지닌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응급개입 단계를 실시한다.

- **(P4: 초기개입 단계)**는 사건 발생 48시간 이후에서 한 달 이내를 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과정 절차 조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며 경찰 내부와 유관 기관을 통한 자원 연결 및 긴급 경제적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도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이 단계에 피해자들이 보일 수 있는 감정반응, 인지반응, 행동반응, 생리반응, 영적반응이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급성 트라우마 스트레스 반응임을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예측하여 수사관과의 협조 아래 피해자를 지원한다.

- **(P5: 연계개입 단계)**는 사건 48시간 이후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종

료되는 약 2개월 시점까지의 단계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건 후 1개월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사건에 대한 강렬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반응들이 지속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트라우마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하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전문심리치료 기관에 연계 조치한다. 형사절차 조력을 주요 목표로 한 P4(초기개입)단계와 P5 연계단계의 핵심은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내 자원들을 연결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 위기개입 모델은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시 우선순위, 중요도, 시급함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경찰 위기개입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는 주요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P6: 사후평가 단계)**는 결국 더 발전된 'P1: 준비단계'로의 출발점이 된다. 경찰 단계별 개입은 피해자의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피해자의 주요 욕구가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시행 조치의 적절성과 효과성은 어떠했는지를 제공자와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P7: 자기돌봄 공통단계)**는 경찰 업무 수행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및 조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진, 대리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간접 트라우마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영향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개인 또는 기관 및 조직차원에서 이러한 트라우마 스트레스의 영향을 관리한다.

근거기반 접근의 경찰 위기개입 모델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 모델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해자 지원시 우선순위와 중요도, 시급함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자원들은 경찰의 위기개입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는 주요 지표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경찰 위기개입 모델의 적용 및 확장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지원시 범죄 사건의 속성, 대상자 속성, 지역 특수성과 함께 경찰 위기 개입모델의 핵심 요소, 원리, 절차들을 핵심 지표로 측정하고 성과 및 효과성 검증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기반 접근은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한 축인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인권보호의 역할 등을 재조명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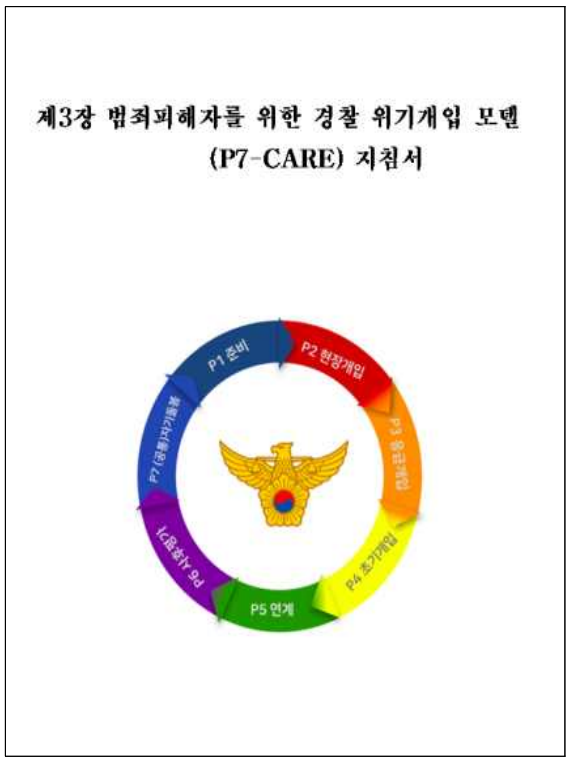

<연구 보고서 표지>

경찰단계 범죄피해자 위기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김정윤 교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3항은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심리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범죄피해자에 전문가의 개입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들 스스로가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역시 바라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에 2016년부터 범죄피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협력을 지속해 온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원장 류인균)과 경찰청은 2017년 범죄피해자 위기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회를 발족**하였다. 뇌과학자, 정신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법학자,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약 1년여의 컨텐츠 개발과정과 전문가 시범사업을 거쳐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폴케어」(이하 ‘폴케어’)를 출시**하였다. 다년간 범죄피해자 외상후증후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집단과 범죄피해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전담하는 경찰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의 참여로 범죄피해자의 실제를 이해한 섬세한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었다. 특히 매일 일정시각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라 푸쉬 알림으로 제공되는 ‘오늘의 어드바이스’는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뇌과학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원, 경찰관 등 약 100명이 설문에 참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검토하여 완성하였다. **폴케어는 범죄피해 발생 후 초기 심리적 안정이 시급한 경찰단계 범죄피해자 위기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과 경찰청은 공동연구회를 발족하여 경찰단계 범죄피해자 위기관기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그림 2〉 폴케어 홍보포스터

폴케어는 기존의 광범위한 일방적 정보제공의 한계를 극복, 피해 유형별, 지원 유형별, 기관별, 지역별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 검

색,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형사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아침에 눈 뜨고 잠들기 직전까지 개인의 손에 들려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보제공의 수단으로서 폴케어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청이 직접 해당 컨텐츠를 입력·관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폴케어는 확대되고 있는 지원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케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외상후증후군의 이해', 소통과 치유를 위한 '마음건강 체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중대한 피해로는 신체상해, 재산상 손해와 같은 것이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우울증, 불면증, 인지장애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성 뇌질환」이 발생하고 이것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렵게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외상후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재경험, 과각성, 회피와 같은 증상이 있다. 따라서 폴케어는 범죄피해자 스스로 PTSD 증상을 이해하고 그러한 증상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리고 사건으로부터의 회복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스로 본인의 증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야말로 치유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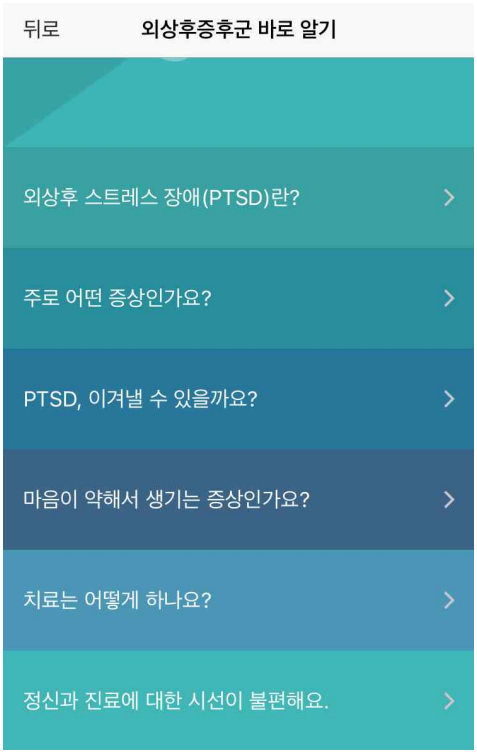

〈그림 3〉 외상후증후군 소개 화면

폴케어에는 2017년 경찰청이 개발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Victim Trauma Scale, VTS)[8]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스스로가 매일 23개의 문항에 응답하고 검사종료 후 곧바로 결과를 제공받아, 본인의 현재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매일의 상태에 따라, 연구회가 개발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피드백에는 피해자가 하루 중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점수화된 결과는 일자별로 기록, 그래프로 표현되어 피해자 스스로가 본인의 심리상태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본인의 증상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마음건강 체크' 과정은 그 자체로 소통과 치유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VTS)란 범죄피해로 인한 급성스트레스장애 증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23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지이다.

〈그림 4〉 폴케어의 심리안정 프로그램

폴케어는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음성으로 호흡명상, 걷기명상, 이완호흡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화면을 색칠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컬러테라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범죄피해 후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장시간 집중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특별한 도구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집, 공원 등 개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현재 심리상태에 따라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외부와의 접촉에 불편감을 느끼는 피해자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침해만을 범죄피해로 인식하여 왔다. 폭행죄의 피해자, 강간죄의 피해자, 강도죄의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의 문제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침해만을 범죄피해로 인식해 왔지만 이제 피해자의 공포, 무력감, 고통과 같은 심리적 피해에 관심을 가지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폴케어가 그 치유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플리케이션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필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큰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고, 이는 그들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SI

현장의 소리

피해자심리지원요원 인터뷰

서울청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옥지연

◉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 합니다.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피해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케어요원 옥지연 경장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전공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각 기관에서의 범죄 피의자 관련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의 전문가 활동, 보호관찰소에서는 상담위원 봉사활동에 2년동안 참여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경찰조직 내에 피해자를 위한 케어요원(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 업무는 간단히 말하자면 범죄피해자들을 상담 · 지원 · 연계하는 업무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사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강력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초기 현장출동을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위기개입활동을 함으로써 추후 피해자가 조속히 범죄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 실제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전남청 소속으로 지방청케어요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남청과 현재 서울청 강남서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보면 지역별로 인프라의 양과 질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도시에 사는 피해자는 경찰지원 이외에도 주거지 가까운 곳에 여러개의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상담지원, 경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 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원기관도 적고 한번 상담 받으려면 1시간은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교통편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실제로 본 터라 지원범위의 지역편차가 크다는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 하려면 우리 경찰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를 만들고 이로써 모든 피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작년 이맘때 전남청케어로 활동하면서 출동했던 여고생실종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단순 실종인줄 알았지만, 실종 여고생이 8일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자살한 父친구가 범인으로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실종직후 경찰에서는 실종지 부근에 CP(지휘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는데, 당시 현장에 나가서 여고생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가장기억에 납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슬픔을 현장에서 고스란히 같이 느껴서인지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입니다.

◉ **경찰에서는 범죄수사 등 가해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아직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18년 4월 17일자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피해자보호도 수사와 같은 경찰의 기본책무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전과 크게 인식이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질문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이제 조금씩은 내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내외적 홍보가 좀더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 **피해자 보호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각오가 있으십니까?**

피해자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을 중점으로 활동해 보고 싶고 기존의 지원제도 이외에 경찰 내부에 다양한 지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다양한 정책 및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 **일선 동료(선후배) 경찰관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보호를 새로운 업무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동료 여러분께서 현장의 피해자를 만났을 때 괜찮냐고 위로의 한마디를 건냈던 것이 바로 피해자보호의 첫 단계이고, 이미 하고 계신 것이니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SI

연구소 소식

◆ 2019년도 상반기 치안정책연구소 워크숍 (4월 3일)

치안정책연구소 상반기 워크숍을 4월 3일부터 1박 2일간 부여삼정유스타운에서 진행하였다. 경찰개혁(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 역할을 논의하고 연구소 운영규칙 및 연구관 평가규칙 개정방향을 토론하였다. 부소산성 탐방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한 체육행사도 진행하였다.

◆ 치안정책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間 MOU 체결 (4월 3일)

지난 4월 3일 10시 30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7동 회의실(대전 유성)에서 치안정책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間 MOU를 체결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소장(하상구)을 포함한 치안정책·과학기술연구부장, 기획운영과장, 김남선·조민제 연구관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한동원 SW·콘텐츠연구소장, 본부장, 그룹장, 연구실장,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다중정보 기반 범죄 대응시스템 개발, 위험상황 초기 인지 대응 플랫폼 개발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양기관은 MOU 체결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치안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융·복합기술 교류, 교통·자율주행, ICT, AI, 빅데이터, 경찰장비, 법과학 분야 융·복합기술 교류, 관련 워크숍 개최와 인력 교류 등을 통한 공동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형 절차적 정의 개발 및 경찰활동 적용방안」특강 (6월 11일)

치안정책연구소 박재풍 연구관은 지난 6월 11일 14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소속 全 계장급을 대상으로「한국형 절차적 정의 개발 및 경찰활동 적용방안」특강을 실시하였다. 강의의 주요내용은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 적용 방안), 절차적 정의 효과성, 해외사례와 한국형 절차적 정의 예시 등이었다.

◆ 치안정책연구소-전자부품연구원(KETI) 間 MOU 체결 (6월 25일)

지난 6월 25일 15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치안정책연구소-전자부품연구원 間 MOU를 체결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소장, 치안정책연구부장, 기획운영과장, 기획팀장, 류연수 연구관 등이 참석하였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조진우 IT소재부품연구본부장, 이관훈 신뢰성연구센터장, 김철희, 김제민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양기관은 MOU 체결을 통하여 장비 표준화 및 향상 연구, 신뢰성 시험, 평가, 분석 업무 협력, 신뢰성 기술교류 및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안정책연구」제33권 제1호 발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치안정책연구」 제33권 1호가 5월 30일자로 발간되었다. 이번호에서는 "위험장비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방안"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제목	저자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방안	송민헌
경찰관의 과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의 학습지원, 지식공유, 업무몰입에 관한 연구	김근호, 장원섭, 손정은, 최규일
과학적 범죄분석 조직의 운영에 관한 제언	윤상연, 장광호, 홍세은
'웨어러블 폴리스캡'의 영장주의 적용 연구	박웅신
일본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개입 및 그 시사점	김혁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 인식에 관한 연구	권정훈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논문모집 공고

□ 학술등재지 논문모집

❍ 공모 기간
- 2019. 6. 10.(월)~8. 2.(금) 〈8주〉
  ※ 2019년 9월말 발간 예정

❍ 논문 접수 분야
-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전, 사회안정, 교통, 안보대책, 치안과학 등 경찰 관련 분야

❍ 응모 자격
- 국내·외 대학 강사 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전·현직 경찰관 등

❍ 기타 사항
- 논문은 A4 기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글자크기 함초롱바탕 10.5P, 각주 9P)
- 내·외부 전문가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 지급(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

※ 투고논문은 다른 매체 또는 지면(학위논문, 용역과제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 문의처
- 치안정책연구소 조금희 연구관 (041-968-2492)

☆ 많은 응모 바랍니다**

「치안정책리뷰」 원고 모집 공고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9월 15일까지 접수).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focusone@police.go.kr
- 메신저 등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상연 연구관 (041-968-2194)

□ 치안정책연구리뷰 편집팀
- 윤상연 연구관, 류연수 연구관

65호 치안정책리뷰 주제: 교통안전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교통안전 환경의 변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음주운전 정책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기술 및 교통빅데이터 분석 기술 확보 등 교통안전 분야에 있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찰의 교통안전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